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

발 의 자 : 이학영 · 박희승 · 강준현
신영대 · 위성곤 · 김영배
김상욱 · 최혁진 · 박민규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이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공원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를 “도립공원위원회”로, “한다)의 경우”를 “한다)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2.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④ 국립공원위원회의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

원이 되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략) <u><신 설></u>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u> <u>2.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u>
<u><신 설></u>	<u>④ 국립공원위원회의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u>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도립공원위원회-----

-----한다)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 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 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	---------------------------------